

# 중국 위안화 기업 외화정기예금 특약

## 제 1 조(특약의 적용범위)

중국 위안화 기업 정기예금 및 중국 송금용 위안 정기예금(이하 “이 예금들”)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화정기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.

## 제 2 조(최저가입금액)

이 예금들의 최저 가입금액은 1백만 위안(CNY)으로 합니다.

## 제 3 조(가입대상)

이 예금들의 가입대상은 중국의 중국인민은행, 재정부, 상무부, 세관총서, 국가 세무총국,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정한 <대외무역대금 인민폐 결제 시범 관리 방법>에 의해 지정된 중국 소재 적격기업체와 상품거래 및 서비스거래를 하는 국내 소재 기업입니다. 은행은 이러한 상품거래와 서비스 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거래처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.

## 제 4 조(가입 기간)

- ① 이 예금들의 가입기간은 7일 이상 1년 이내에서 월단위 또는 일단위 중에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기간으로 합니다.
- ② 중국 송금용 위안 정기예금의 경우 중국내 관련 규정에 의해 가입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## 제 5 조(입금 및 지급)

- ① 이 예금들에의 입금은 중국의 중국인민은행 등이 제정한 <대외무역대금 인민폐 결제 시범 관리방법>에 의해 지정된 중국 소재 적격기업체와 상품거래 및 서비스거래에서 발생하거나 해당 대상거래를 위한 금액 범위 이내로 제한됩니다.
- ② 입금과 지급은 전신환 거래(계좌이체 포함)가 가능하며, 현찰로 입금 또는 지급할 경우에는 은행 현찰취급통화로 제한됩니다. 단, 중국(Mainland China)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위안화(CNY) 전신환 거래에 의한 입금 및 위안화(CNY) 현찰로 입금 또는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③ 중국 송금용 위안 정기예금의 경우, 입금은 중국(Mainland China)으로 무역결제를 위한 송금 목적으로 은행의 환전 서비스를 통해서 조달한 위안화(CNY) 자금만 입금할 수 있으며, 지급은 중국으로 무역결제를 위한 송금 또는 동 송금을 위한 중국 송금용 위안 보통예금으로의 이체만 가능합니다.
- ④ 중국 송금용 위안 정기예금의 경우, 중국(Mainland China)으로 무역결제 송금을 위해 허가된 금액이나 보유 기간을 초과한 예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그 초과된 사실을 인

지한 경우 해지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을 적용하여 최초 환전 당시의 통화로 지급합니다.

제 6 조(이율의 적용)

- ① 만기일 후 지급 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영업점과 인터넷에 고시된 이 예금들의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.
- ②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청구할 때는 그 이자는 예금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에 고시된 이 예금들의 중도 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이 예금들의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제 7 조(기한변경)

이 예금들은 외화정기예금약관 제11조에 의한 기한변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제 8 조(중도해지)

- ① 거래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 예금들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거래처는 해지일 직전 영업일 은행 영업시간 마감전까지 '계좌해지신청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② 중국 송금용 위안 정기예금을 중국(Mainland China)으로 무역결제 송금을 위해 허가된 금액이나 보유기간 초과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매율을 적용하여 최초 환전 당시의 통화로만 지급가능합니다.